

『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
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『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
5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의해

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바, 이는 상위 법률에서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.

-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서 “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(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)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”라는 규정은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써 법익의 실익이 없고, 해당 조례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5조제1항 단서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(자치구 조례 포함)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